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- 180호

2017년도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
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

2017. 4. 8.(토) 시행하는 2017년도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4일

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---

1. 시험일자 : 2017. 4. 8.(토)

2. 시험장소 : 제주아라중학교

※ 제주시 간월동로 30 ☎750-6755

3. 시험시간

구 분	응시직렬(급)별	시험과목수	수험생 입실시간	시험시간(분)
공개경쟁	지방사회복지9급	5개 과목	9:20	10:00 ~ 11:40(100분)

※ 장애 및 저소득 구분모집도 동일함.

4. 응시자 준수사항

가.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**09: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

※ 응시자에 한해 07:0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.

※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(09:50분경)에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나.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s://local.gosi.go.kr)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,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(토익, 토플, 텝스, 지텔프 등)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(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)

※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경우는 가산비율(10%, 5%, 3%)과 보훈번호 입력

※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을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
※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응시표는 원서접수사이트(「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 (https://local.gosi.go.kr)→ "마이페이지")에서 출력(3.24.부터 출력가능)

라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**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 되어 있음)을 **지참**하여야 합니다.

※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마.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(1개)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
바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배탈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, 수분 과다섭취 등 **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
사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**"●"로 표기** 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. 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)

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▮▮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

아.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, 답안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.

자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시험당일 07:00 이전에 시험실 내부출입은 불가합니다.)

차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카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타.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관리총괄용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본인의 시계로 시작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어진 시험시간(5과목-100분)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
※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

파. 필기시험 문제책은 전 과목 공개합니다.

5. 부정행위 등 금지

가.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~ 6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○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○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○ **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**
○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○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,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○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~ 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○ **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**
○ **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○ **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**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○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**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**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**
- **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**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**합격자 발표는 2017. 4.28.(금), 18시**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**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**(www.jeju.go.kr) **시험정보게시판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,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※ 원서접수사이트(「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」 홈페이지(https://local.gosi.go.kr))에서 확인가능

※ 시험장 안내도

아라중앙중학교

▸ **교통편 : 시내버스 2,3,5,6,7,8,10,11,28,31, 36, 37, 43, 46, 51, 55, 87, 500, 502, 710-1, 720-2, 730-1, 770, 781, 781-1, 781-2 탑승(제주여자중고등학교 앞 하차 후 도보 10분 이동)**